

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6. 29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이 폐지되고 봉명·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청산금의 소멸시효가 2007. 6. 29일자로 만료되어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개발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폐지 / 5건

(2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도시개발법

부칙 <제6853호, 2002.12.30>

제2조 (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(법률 제5982호)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(법률 제5904호) 제9조·제10조·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(법률 제5982호)을,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(법률 제5904호)을 각각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다.

□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[일부개정 1999. 2. 8 법률 5904호]

제32조 (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)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8조의2 (청산금의 소멸시효)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[폐지 2000.1.28 법률 제6252호]

土地區劃整理事業法은 이를 廢止한다.